

【 4 】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7. 2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내에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노외주차장에 한함) 월 정기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장애인동반 운전차량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자립추진에 기여하며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동조례 인용조항 불부합사항 및 서식등을 개정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 범위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노외공영주차장에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월 정기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제3조 제1항)

나. 장애인 및 장애인동반운전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감면함(안 제3조 제3항)

다. 주차장법('95. 12. 19자) 및 동법시행령('96. 6. 4자) 개정과 관련하여 동조례중 관련법 인용조항의 불부합으로 인한 미비사항 및 서식등을 개정함(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준농림지역 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함.

(안 제13조 제1항)

마.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강화하여 정함.

(안 제13조 제2항)

바. 시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부지인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함. (안 제15조)

사.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 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의3)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3항중 “장애인의 자가운전자 차량”을 “장애인의 자가운전자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중 “허가번호”를 “신고번호”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한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9조 제목중 “이용제한”을 “사용제한”으로 하고 동조중 “이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영제6조 제4항”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신고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제12조 제2항의 단서”를 “법제12조 제2항”으로 하며 “신고만으로 설치 할수 있는 노외주차장(이하 ”신고노외주차장“이라한다)”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하고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하고 제3호 “영제4조 제1호,제2호,제3호”를 제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각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법제12조의 단서규정”을 “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으로하고

“신고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하며 “영 제3조 제4항”을 “규칙 제7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①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제1호 내지 제32호(제22호 가목 및 제24호, 제27호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 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영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 인가신청서에 그 설치 내용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하천·철도(고가철도 제외) 등으로 인하여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 될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영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영

제11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①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별표1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동항제3호중 “지체부자유자용”을 “장애인용”으로하고 동조제2항 및 동항제2호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동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이용) ①법 제19조의3 규정에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주차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종류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을 준용하되, 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준용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2. 주차장의 규모 : 주차대수 10대이상인 주차장

②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 배치도(일반이용부분 표시)

2. 인근 200미터 이내에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면적·건축연면적·건축물의 용도·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 · 건물 등기부등본

5.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관리규정(규칙 제8조에 의한 관리규정으로 이 경우 노외를 부설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중 “영제11조의2 제2항”을 “영제17조 제2항”으로 하고 과징금 가감기준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조중 “법제30조 제2항”을 “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양주군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관련)

0, 1급지

(단위: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분기준)
대형	800	1,600	500	1,000
소형	500	1,000	300	600

0,2급지

(단위: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기준)	2시간초과시 (1구획당30분기준)
대형	500	1,000	300	600
소형	300	600	200	400

※ 대형은 2.5톤이상 화물차와 16인승이상 승합 및 버스를 말한다.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관리법 제7조 1항 및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당해 군의 특성 및 주차장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가. 1급지 :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500m이내
나. 2급지 : 1급지외의 지역
4. 주차요금은 당해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 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수있다.
가. 급지별 요금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1급지가 2급지의 1.5배 ~ 2배의 수준이 되도록 한다.
나. 주차수요억제 및 주차장 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시간초과 주차 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 징수한다.
5.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한함)내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월정액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 : 40,000원이내
6. 야간주차차량에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

(별 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 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1.5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 대수+기타 부대시설면적 30m ² 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의료 시설	종합병원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90m ² 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운동 시설	골프장	0.8홀당 10대
	골프연습장	0.8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
관람 시설	기 타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운동경기관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집회 시설	예식장	시설면적 40m ² 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m ² 당 1대
판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m ² 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m ² 당 1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 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 외한다)	유 흥 음식점	시설면적 40m ² 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m ² 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 창고시설(냉동, 냉장창고를 제외한 다)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30m ² 초과 200m ² 이하는 1대, 건 축연면적 200m ²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 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20m ² 당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 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별 표 3)

건축물의 용도 시설물의 종류 (제18조의3 제1항 관련)

시설물 종류	내용
○ 근린생활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1). 병원
○ 교육연구시설	1). 학교 2). 교육원 3). 학원 4). 연구소 5). 도서관
○ 운동시설	1). 체육관 2). 운동장
○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2). 일반업무시설
○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 위락시설	1). 주점영업 2). 특수목욕장 3). 유기장
○ 관람집회시설	1). 공연장 2). 집회장 3). 관람장
○ 전시장	1). 미술관 2). 기념관 3). 이와 유사한것
○ 운수시설	1).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2). 철도역사
○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2). 정비공장, 운전학원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어린이회관

(별표 4)

과징금 가감기준(제19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위반정도	기본과징금	가감후과징금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위반시	250	250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위반시	100	100
	2회이상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이상		110
	3회이상 또는 주차요금의 100%이상		12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위반시	50	50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반시	50	50
	2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6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위반시	50	50
	2회이상 위반시		6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1회위반시	50	50
	개선명령 2회위반시		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위반시	50	50
	2회이상 위반시		60
8. 신고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노외주차장에 한함)	위반시	50	50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60

(별 표 5)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20조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별	구 분	과 태 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치장을 설치한자 (법 제12조 제2항 규정 관련)	바닥면적 500 m ² 미만	90
	바닥면적 500 m ² 이상	10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법 제16조 관련)	신 고 주 차 장	50

=비 고 =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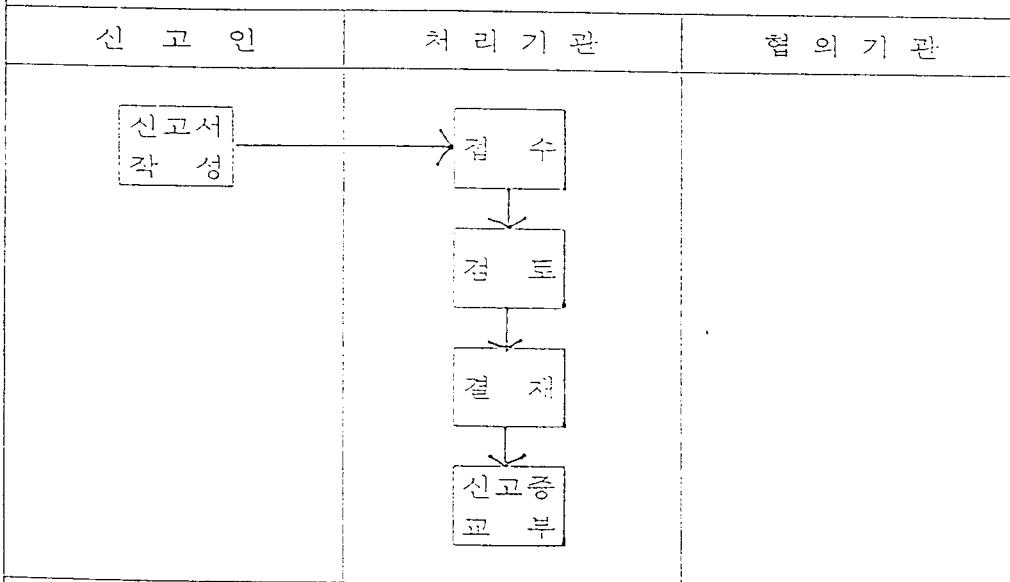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한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명칭	⑥ 주차장의 형태
	⑦ 위치	⑧ 규모 대
	⑨ 착공(예정)일	⑩ 사용승인일 또는 예정일
양주군주차장조례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양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안의 주차시설 배치도 인근 100미터 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일 것)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사(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연면적·총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이 경우 노외를 부설로 본다) 		

<뒷면>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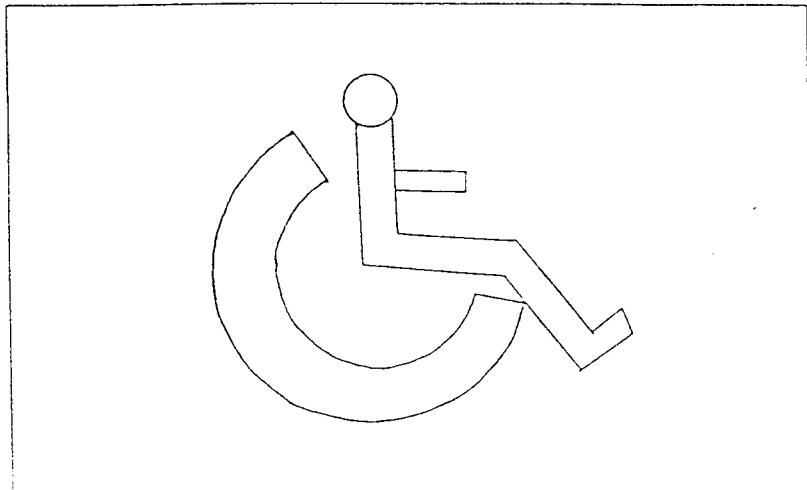
양주군주차장조례 제1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전용표지 (제18조의2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 ~ 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p> <p>①~②(생략)</p> <p>③장애인의 자가운전자 차량에 대하여 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증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 의 20%를 경감한다.</p> <p>④(생략)</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장애인의 자가운전자 차량과 장애 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 -----</p> <p>④(현행과 같음)</p>
<p>제5조(주차장의 표지)</p> <p>①(생략)</p> <p>1~2(생략)</p> <p>3. 기타 필요한 사항(<u>허가번호</u>, 관리 자주소, 주차 제한차량등)</p> <p>②~④(생략)</p>	<p>제5조(주차장의 표지)</p> <p>①(현행과 같음)</p> <p>1~2(현행과 같음)</p> <p>3. -----(<u>신고번호</u>, -----)</p> <p>②~④(현행과 같음)</p>
<p>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p> <p>①(생략)</p> <p>②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 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 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 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 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p>	<p>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p> <p>①(현행과 같음)</p> <p>②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한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 ----- ----- ----- -----</p>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 사용 ----- 사용 ----- 사용 ----- 사용 -----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생략)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생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③(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노외주차장 설치기준) ①법 제12조2항의 단서의 규정의 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하 "신고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40대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것. 2.(생략) 3. 영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①법 제12조제2항 -----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 ----- 1.(삭제) 1.(현행 2와 같음) 2.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현 행	개 정 (안)
<p>② 법 제1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영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u></p> <p>제13조(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개발구 역내의 주차장 설치)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지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그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전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전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p>	<p>②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 ----- 노외주차장 ----- 규칙 제7조 제1항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부설주차장</u></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p> <p>① 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국토이용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제1호 내지 제32호(제22호 가목 및 제24호 내지 제27호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p> <p>② 영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③ 영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 인가신청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영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별표3에서 정한 연면적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 (삭 제) 제14조 (삭 제)</p>
<p>제15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우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하천·철도(고가철도 제외)등으로 인하여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될 때 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영 제11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동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원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6조 (삭 제) 제16조 (삭 제)
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 조의3의 규정에 조업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 주차대수 5% 이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에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및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 계획 등)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제17조 (삭 제) 제17조 (삭 제)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기준) ①~③ (생략)	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별표1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생략)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현행과 같음) 3. 장애인용 ② 장애인 1. ----- 2. ----- 장애인----- 3. (삭제)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장애인----- 2. ----- 장애인-----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의3(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주차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을 준용하되, 그 건축

현 행	기 정 (안)
	<p>물의 용도분류 중 준용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p> <p>2. 주차장의 규모 : 주차대수 10대이상인 주차장</p> <p>②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 배치도 (일반 이용부분 표시) 2. 인근 200미터 이내에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3. 토지의 지변·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면적·건축물연면적·건축물의 용도·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5.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관리규정(규칙 제8조에 의한 관리규정으로 이 경우 노외를 부설로 한다.) <p>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 후 별지 3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4 장 보 칙</p> <p>제19조(과징금처분)①영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제20조(과태료 처분)별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p>	<p>-----</p> <p>제19조(과징금처분)①영제17조 제2항의 -----</p> <p>-----</p> <p>제20조(과태료처분)별 제30조 제1항 및 제2항-----</p> <p>-----</p>